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78호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부식품제공사업자가 기호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정보제공 및 협조할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 알선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 함. (안 제7조)
- 마.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11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기부식품”이라 함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지요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기타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보조인력 인건비
5.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9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7조(식품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

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신고) -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제9조(이용자 보호) - 제10조(지도·감독 등)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사업자) -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 식품위생법 - 제2조(정의)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